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903호 2025. 2. 24.(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10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2호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3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6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31호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사업 조합설립인가(경미한 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제1903호 2025. 2. 24.(월)
람		

차 례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0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9호 등록 공인 공고 ————— 40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5년 하반기 조성 예정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시설 사용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용어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나.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 제8호)

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및 선정 취소, 입주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청년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
- 5.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서구”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 7.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 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를 “서구”로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중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청년공간	청년센터 서구1939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94번길 19, 6층
청년창업지원센터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 (제12조제4항 관련)

구분	항목	마일리지 범위	1일 제공(사용) 한도	비고	
청년 공간	적립	청년센터 서구1939 출석	500점 이내	-	1일 1회
		청년센터 서구1939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멤버십 친구 추천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행사 참여	2,000점 이내	4,000점 이내	
	사용	커피 1회 이용권	500점 이내	멤버십 한도 내	
		굿즈 교환	20,000점 이내	20,000점 이내	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	40,000점 이내	40,000점 이내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	시기	대상	홍보 물품	지급 기준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1인당	총액
공모전	연 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수상자 및 참가자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온·오프라인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등 참여자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청년시설</u>”이란 <u>청년공간 및 청년지원센터는 물론 청년창업·청년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한 목적별 청년 특화시설 등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체를 일컫는다.</u></p> <p>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청년시설</u>”이란 <u>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창업지원센터</u>”란 <u>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u></p> <p>5. “<u>입주자</u>”란 <u>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u></p>
<p>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u>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u></p> <p>③ ~ ⑥ (생략)</p>	<p>제3조(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서구</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u>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제4조(기능) ----- -----.</p>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 (생략)

제8조(사용허가 등) ① ~ ③ (생략)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

7.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사용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서구 -----
-----.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

-----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5-32호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고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칭: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73번지 외 30필지
- 나. 면적: 5,318.6㎡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미정
- 나. 준공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조합명칭: 인천석남동 47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하)
- 나.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37번길 10, 2층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알길 22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2.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5-02-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54-6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231번안길 22 (오류동)	20090922	단봉로231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50-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2길 6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2-8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24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3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65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65)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4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665호선)
- 명 칭: 인천 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 3-665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3	665	12	12	310	298	12	-	159.5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858.9	159.5					
1	가정동	647-2	대지	159.5	159.5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중로	3	665	12	국지 도로	310 (12)	대로3-111 (가정동77-8)	대3-111 (가정동663)	일반 도로	-	인천고시248 (20.6.29.)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31호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를 위한 공람·공고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5. 2. 24. ~ 2025. 3. 10.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거북로77번길 1, 3층)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경미한 변경)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
 - (3) 구역면적: 9,167.3㎡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173명

- (6) 사업시행자: 석남동 52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섬결)
- (7) 변경내용: 권리 이전 등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 조합 임원 변경, 대의원 변경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6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및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구 분	소재지(개정 전)	소재지(개정 후)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88, 5층(석남동)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이메일 friend10@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 및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소재지) 조문에 따른 별표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구 분	소재지(개정 전)	소재지(개정 후)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5번길 3(신현동)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94번길(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88, 5층(석남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협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관할구역과 같다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8, 5층(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별표]

구청 및 동 청사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서 구 청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80(검암동)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연희동)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58(청라동)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69(청라동)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9(청라동)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06번길 25(가정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100(가정동)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78번길 16(신현동)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8, 5층(석남동)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16(석남동)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석남동)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가좌동)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09번길 4(가좌동)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57번길 4(가좌동)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80번길 14(가좌동)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마전동)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14(불로동)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원당동)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2(왕길동)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아라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바리미로 23(원당동)

지방자치법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위원의 수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관련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

다.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문 등 정비

- 상위법과 배치되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대한 조문 삭제
-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032-560-4436, 팩스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련 조문 수정

○ 현행) 조례 제14조의2제2항 → 개정) 조례 제13조제2항

○ 현행) 조례 제15조의2제1항 → 개정) 조례 제13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정책과, 전화 032-560-4436, 팩스 032-560-2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련 조문 수정

- 현행) 조례 제14조의2제2항 → 개정) 조례 제13조제2항
- 현행) 조례 제15조의2제1항 → 개정) 조례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제14조의2 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u>인천광역시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u>(이하 “조례” 라 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2. (생략)</p> <p>② 조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u>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u>」----- 제13조제2항-----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3조제1항</u>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70호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공람공고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경미한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람기간: 2025. 2. 24. ~ 2025. 3. 10. (14일간)
2. 공람장소: 서구청 주택과(서구 서곶로 323, 3층),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구 서달로123번길 12-4, 상가건물 204호)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경미한 변경) 관계서류
4. 의견제출: 공람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경미한 변경)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석남역 석남동 49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0-1번지 일원
 - (3) 구역면적: 3,616.2m²
 -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 (5) 조합원수: 128명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479호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2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공인 등록 사유
: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 2. 공인 등록일 : 2025년 3월 4일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별첨” 참조

공 인 목 록

- 통합증명발급기 설치수량(1대) : 공인수량 4개
- 불로대곡동

연번	공 인 명	규 격 (Cm)	수 량	비 고
1	불로대곡동장인(통합민원전용4)	2.1×2.1	2	중,형
2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불로대곡동통합민원전용4)	2.4×2.4	2	중,형

□ 등록 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불로대곡동장인/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5년 3월 4일	
불로대곡동장인/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5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불로대곡동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5년 3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불로대곡동통합민원전용4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설치	2025년 3월 4일	